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

(법률 제4,654호, 1993년 12월 27일)

◇ 개정이유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등에 관한 업무를 환경처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전환하고, 전용공업지역·공업단지등에 위치한 공장의 배출시설은 허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측정대행자의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함과 아울러 정수제근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벌칙중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로 완화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수리에 관한 업무를 환경처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전환하고, 전용공업지역·공업단지등에 위치한 공장의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허가대상에서 제외함(법 제9조).
- 나.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소음·진동이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지시설설치면제승인을 받아야 하는 바, 이 경우 환경기술감리단의 기술검토를 받도록 하던 절차를 폐지함(법 제10조제1호).
- 다. 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전에는 설치완료신고와 시

설확인 및 적합판정을 받아 조업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가동개시신고후 즉시 조업할 수 있도록 하되, 시·도지사가 조업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시설을 확인하도록 함(법 제13조).

- 라. 건설 및 교통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은 시·도지사가 규제지역지정시 그 기준을 정하여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등을 통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함(법 제24조 및 제29조).
- 마. 시·도지사가 생활소음·진동 규제지역안의 이동소음원에 대하여 관찰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시간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법 제41조).
- 바. 소음·진동의 자기측정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처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하던 것을 등록하는 제도로 전환하고, 측정대행자에 대한 정수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경쟁제한적 요소를 폐지함(법 제47조).
- 사. 소음·진동의 직접적인 배출과 직결되지 아니하는 측정기록의 보존위반등 가벼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완화함(법 제60조 및 제61조).

(법제처 제공)

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소음·진동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을 “소음·진동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공장에서 배출되는”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환경처장관”을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업단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위치한 공장에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허가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제14조 내지 제17조, 제18조(허가취소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5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사업자로 본다.

제10조본문중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을 “그 공장으로부터 배출되는”으로 하고,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도지사가 그 배출시설의 기능·공

정 또는 공장의 부지여건상 소음·진동이 항상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의2제2항중 “환경처장관”을 “시·도지사”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 본문”을 “제1항”으로 한다.

- ①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은 사업자가 스스로 설계·시공하거나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설업자로 하여금 설계·시공(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자의 경우에는 설계에 한한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의 제목중 “설치승인등”을 “설치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전단중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배출시설로부터”를 “공장에서”로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3조의 제목중 “설치완료”를 “가동개시”로 하고, 동조제1항중 “환경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를 “미리 시·도지사에게 가동개시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동개시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후가 아니면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시·도지사는 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조업을 하는 때에는 조업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사항과의 부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허가 또는 변경허가사항과 부합되지 아니하여 시설개선·조업정지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 지체없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사업자는 제8조 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중 “환경처장관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판정을 받아 조업중인 배출시설에서”를 “시·도지사는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공장에서”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중 “환경처장관은”을 각각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환경처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8조본문중 “환경처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전단중 “환경처장관”을 각각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측정대행자”를 “측정대행업자”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환경처장관”을 “시·도지사”로 한다.

제22조중 “환경처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4조·제27조 및 제2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건설소음·진동 규제기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규제지역안의 특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은 환경처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7조(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진동의 방지) 시·도지사는 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진동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하여 폭약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용의 규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9조(교통소음·진동의 한도)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규제지역안의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의 한도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그 한도 및 시행시기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환경처장관은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구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0조중 “우회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를 “우회등을 지방경찰청장에게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1조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규제기준을”을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로 한다.

제37조제1항중 “환경처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전단중 “환경처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환경처장관이”를 “시·도지사”로, “환경처장관에게”를 “시·도지사에게”로 한다.

제5장 제목중 “생활소음”을 “생활소음·진동”으로 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 ①시·도지사는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고 주거환경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소음·진동발생원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생활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진동 규제지역의 범위, 규제지역안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0조의 제목중 “방음시설”을 “방음·방진시설”로 하고, 공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작업시간의 조정·소음발생행위의 중지·방음시설의 조치등”을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조치등”으로 한다.

①시·도지사는 생활소음·진동 규제지역안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음·진동을 발생하는 자에 대하여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도지사는 이동소음원으로 인한 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진동규제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시간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항공기소음의 규제) ①환경처장관은 항공기소음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기소음의 한도를 초과하여 항공주변의 생활환경이 매우 손상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 기타 항공기소음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항공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항공기소음규제에 관한 다른 법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2조 다음에 제6장의2(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방음시설의 설치기준등 제6장의2 방음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42조의2(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①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음벽·방음림·방음등등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충분한 차음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환경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이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을 달리 정하는 있는 경우에는 그 성능 및 설치기준에 의한다.

제4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진동방지시설의 설계를 그 직무로 하고자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또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소음·진동방지시설의 설계를 위한 영업을 하고자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를 한 자중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에게 신고를 한 자는 당해 분야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방음시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7조의 제목 (“측정대행자의 지정”)을 “(측정대행업의 등록)”으로 하고, 동조제1항전단중 “(이하 ‘측정대행자’라 한다)”를 “(이하 ‘측정대행업자’라 한다)”로, “환경처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를 “환경처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항후단중 “지정받은”을 “등록한”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측정대행자”를 각각 “측정대행업자”로 하고, 동조제5항중 “측정대행자”를 “측정대행업자”로, “지정의 취소”를 “등록의 취소”라 한다.

제48조제1항전단 및 제2항중 “환경처장관”을 각각 “시·도지사 또는 환경처장관”으로 한다.

제49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소음도표식의 부착권고) 환경처장관은 소비자에게 저소음제품을 선택·구매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소음을 발생하는 기계·기구 기타 제품(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대상기구를 제외한다)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기계등에 소음의 정도를 표시하는 표식을 부착하여 판매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50조중 “방음시설업”을 “방음시설업(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음시설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3호중 “사용하는 체석장·공사장등의 운영·관리자”를 “사용하는 자”로 하고, 동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7호중 “측정대행자”를 “측정대행업자”로 한다.

5의2.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인 자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연차보고서의 제출) ①시·도지사는 매년 주요 소음·진동관리시책의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55조제4호중 “측정대행자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측정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으로 한다.

제57조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5호로 하고, 동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제58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호를 삭제하며, 동조제7호중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을 “등록·변경등록 또는 신고를”로 하고, 동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3.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허가 또는 변경허가사항과 부합되지 아니하여 조합정지명령외의 시설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업무를 대행한 자

제59조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2호의 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점검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2의3.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또는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제60조제1호 및 제5호를 삭제하고, 동조제6호를 제5호로 하며,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여 이를 제6호로 하고, 동조제3호를 제2호로 하며,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6. 제47조제3항 또는 제4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측정결과 또는 검사결과를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기록한 자

제6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에 제2호의2 및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동항제5호 및 제7호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제8호중 “규제를 위한 명령을 위반한 자”를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위반한 자”로 하며, 동조제2항중 “환경처장관이”를 “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로 하고, 동조제3항중 “환경처장관” “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며, 동조제4항중 “환경처장관은”을 “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국세체납처분”을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으로 한다.

1. 제9조제2항, 제10조의2제2항, 제21조제1항 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측정결과를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측정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변경지정된 측정대행자는 제4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된 측정대행업자로 본다.

③(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차의 확인업무를 행하는 검사대행자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는 제4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동 업무를 행하는 검사대행자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로 본다.

④(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

(법률 제4,656호, 1993년 12월 27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8호중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을 “축산폐수처리시설”로, “방법에 따라 공동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시설”로 한다.

7. “분뇨처리시설”이라 함은 분뇨를 침전·분해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제2항전단,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중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을 각각 “축산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9조제1항2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타 침화조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

제12조중 “환경정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감리단의 기술검토를 거쳐”를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24조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정화시설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동일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분뇨와 축산폐수를 병합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은 이 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를 각각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제1항제1호중 “설치하는 경우”를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제38조제2항”을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2. 오수처리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제14조제4항중 “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2항의 관리기준에 의한 정화조의”를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설의”로 한다.

제1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등)환경처리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공산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오수의 수질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당해 공산품의 판매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24조제3항중 “그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로 한다.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축산단지등에 설치하는 공동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승인 등)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축산업자로서 축산단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 동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설치전에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5조의3(권리·의무의 승계) ①축산업자가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축산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축산폐수배출시설등의 준공검사) 축산업자는 축산폐수배출시설과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7조본문중 “제38조제2항”을 “제3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환경처장관이 정하는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스스로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중전의 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②축산업자는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운영할 수 없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4항(중전의 제2항)중 “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을 징수한 때에는”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 부과금 및 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전의 제3항)중 “배출부과금징수”를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의 징수”로, “배출부과금중”을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 중”으로 하며, 동조제6항(중전의 제4항)중 “제3항”을 “제5항”으로, “배출부과금”을 “배출부과금 또는 가산금”으로 한다.

②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제2항전단, 제31조의 제목 및 동조제2항, 제32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제2항중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을 각각 “축산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중 “설치권고등”을 “설치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전의 제1항)중 “축산폐수배출시설외의”를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축산폐수정화조 설치대상축산시설외의”로 하며, 동조제4항(중전의 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①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상지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제24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외의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축산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간이축산폐수정화조설치외의 방법으로 축산폐수의 적정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관리 등)

①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설치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설치기준과 관리기준에 따라 그 설치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간이축산폐수정화조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업자에게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제14항 중 “영업구역·기한”을 “영업구역을 정하거나”로 한다.

제36조제3호중 “이 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을 “이 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전단중 “분뇨처리시설 또는 오수정화시설”을 “분뇨처리시설·오수정화시설·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의 준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⑤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자가 제13조제1항·제3항, 제22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 등을 시공함에 있어서 그 시공이 건설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설계·시공할 수 있다.

제39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조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의 준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0조본문중 “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환경처장관”으로 하고, 동조제1호본문 중 “제39조제4항”을 “제39조제5항”으로 하며, 동조제4호중 “제38조제1항·제2항”을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2호중 “배출시설관리인”을 “환경관리인”으로 한다.

제47조중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을 “축산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49조제3호중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52조제2항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을 “축산폐수처리시설”로, “총리령(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 정하는”을 “총리령이 정하는”으로 한다.

제53조제3호중 “설치한 자”를 “설치 또는 운영한 자”로 한다.

제54조제6호중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를 “분뇨처리시설 또는 오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로 하고, 동조제7호중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를 “분뇨처리시설 또는 오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의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로 하며, 동조제8호중 “제38조제2항”을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55조제8호중 “제28조제3항”을 “제28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14.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의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제56조제6호중 “제28조제3항”을 “제28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

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처리하거나 승인사항을 변경한 자

6의3.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제58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0호의2 및 제10호의3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1조, 제26조 또는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오수정화시설·정화조·축산폐수정화시설 또는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사용한 자

5. 제14조제2항, 제28조제3항 또는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오수정화시설·정화조·축산폐수정화시설 또는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한 자

6의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공산품의 판매 또는 사용금지조치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9.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구역 기타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자

10의2 제38조 4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의3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4. 제4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록·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

제58조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처분이 고지된 날부터”를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로 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제2항”을 각각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 및 제5항중 “제3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 내지 제5항을 동조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2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등에 관한 적용례) 가산금등에

관한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이 이 법 시행후에 부과되는 축산폐수에 대한 배출부과금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오·폐수병합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감리단의 기술검토를 거쳐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인 오수·분뇨·축산폐수 또는 폐수를 병합처리하는 시설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인 시설로 본다.

제4조(공동축산폐수정화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자가 공동으로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인 축산폐수정화시설로서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축산단지 또는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 설치된 축산폐수정화시설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설치승인을 얻은 시설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 1년 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설치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인 간이축산폐수정화조로서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등에 설치된 것은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간이축산폐수정화조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하는 축산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 1년 이내에 제33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적합한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는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